2020년도 제6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

2020년도 제6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☐ 회의일시 : 2020. 12. 11(금) 14:00~15:15

☐ 의결방법 : 온라인을 통한 화상회의

☐ 심의결과

1. 규칙개정안건
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차기 위원회 심의	부결
10건	10건	-	-	-	-

2. 일반의결안건 · 보고안건

일반의결안건					보고안건	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부 결	안건수	원안 접수
-	-	-	-	-	2건	2건

붙 임 : 1.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2. 보고사항 결과

2020. 12. 11.

위원장	한국전력거래소	조영탁
위 원	산업통상자원부	이옥헌
	숭실대학교	송경빈
	법무법인 화우	류병채
	한국전력거래소	조강욱
	한국전력공사	박형덕
	한국동서발전	이승현
	GS EPS	이재덕
간 사	한국전력거래소	문경섭

한송희/20201215162839

12792005041608017326

【붙임 1】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회원사 매출채권 권리관계 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6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0-6-1호
개최일시	2020년 12월 11일 14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☐ 전력거래 대금채권에 대해 **질권설정을 허용**하는 문구삽입 ☐ 별지의 **채권양도와 질권설정 통지서 및 정산계좌 변경신청서 양식 세분화** ☐ 발전기별 양수인이 다른 경우에 한해 **다수의 정산계좌 지정 허용**
주요 토의내용	☐ **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**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0년 12월 11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

한송희/20201215162839

12792005041608017326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정산관련 서류업무 전자화를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6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0-6-2호
개최일시	2020년 12월 11일 14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회원사 등록 및 정산계좌 변경서류 등을 **전자시스템으로 제출**하도록 규정 □ 정산 관련 서류 **전자접수 시 절차** 기준 신설 ㅇ동의절차, 전자서명, 이의신청, 원본보관 의무 등
주요 토의내용	□ **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** ㅇ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0년 12월 11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 (서명)

한송희/20201215162839

1279200504160801732 6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우량 전력구매자의 전력거래대금 등 재정보증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6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0-6-3호
개최일시	2020년 12월 11일 14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"전력구매자" 용어 정의 신설 ㅇ 전력구매자의 **용어를 정의**하고 **사업자의 종류를 정함** □ 일정 조건 충족시 **재정보증 면제 조항 신설** ㅇ (조건1) 공공기관인 경우 -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자 ㅇ (조건2) 신용평가등급이 최우수등급인 경우 -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335조의3 상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사*에게 장기신용등급** 최우수(AAA) 등급을 부여받은 자
주요 토의내용	□ **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** ㅇ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0년 12월 11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 (직인)

한송희/20201215162839

12792005041608017326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시운전발전기 급전지시 시 미입찰에 대한 정산 신설(안)

제6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0-6-4호
개최일시	2020년 12월 11일 14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시운전발전기의 급전지시 계획 통지시점이 예정일 초기입찰 마감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**발전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급전지시로 인한 전력거래량에 대해 정산**토록 정산항목 신설 ㅇ 용량 정산금은 급전지시로 인한 발전량(MGOi,t)으로 정산하며, 에너지 정산금은 SMP와 변동비 중 큰 값으로 지급
주요 토의내용	□ **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** ㅇ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0년 12월 11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 (직인)

한송희/20201215162839

1279200504160801732 6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전력량계 오차시험 제도개선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6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0-6-5호
개최일시	2020년 12월 11일 14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☐ 오차시험 **시행 절차 보완 및 문구 정비** ㅇ 공인시험기관 외 전력거래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경우, 규칙에서 정한 시험조건을 구비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☐ 전력량계 시험시 시행하는 **안전성 검사 시험주기 변경** ㅇ 계량설비의 안전성 검사를 오차시험과는 별개로 전력거래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 ☐ 오차시험 **불합격시 조치절차 추가** ㅇ 오차시험 불합격시 전기사업자는 1개월 이내 조치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전력거래소로 제출
주요 토의내용	☐ **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** ㅇ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0년 12월 11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

한송희/20201215162839

12792005041608017326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태양광 전기사업자 최초 전력거래시점 개정(안)

제6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0-6-6호
개최일시	2020년 12월 11일 14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☐ 최초 전력거래시 **승인절차 신설** ㅇ 회원사의 전력거래 개시 승인요청, 거래개시 승인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, 기존에 사용하던 '최초 계통연결' 용어 대신 전력시장 측면의 '전력거래 개시' 로 변경 ☐ 봉인완료 통지서 발급에 대한 **근거조항 신설** ㅇ '계량설비 검사 및 봉인완료 통지서' 발행 근거조항 신설 ☐ 비중앙 발전기의 **전력거래 개시일 명확화** ㅇ 비중앙 발전기는 전력거래 개시 승인일부터 전력거래 가능 ☐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전력거래 개시 **절차 간소화** ㅇ 봉인완료 통지서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거래 개시 승인절차 갈음 ☐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**봉인당일 전력거래 개시 자격 부여** ㅇ 태양광 전기사업자의 경우, 전력거래 개시일을 봉인 당일(봉인당일 0시 부터)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봉인 당일의 발전대가 지급근거 마련
주요 토의내용	☐ **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** ㅇ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0년 12월 11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

한송희/20201215162839

12792005041608017326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발전소 154kV 변압기 통보휴전 절차 관련 규정개정(안)

제6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0-6-7호
개최일시	2020년 12월 11일 14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발전소 154kV 변압기 휴전 시 발전기 정비·고장 또는 발전기 출력 제한이 없는 경우*는 급전 전화로 통보할 수 있도록 **발전기 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 개선** * (예시) 운전 중인 발전기 기동용 변압기 정비작업의 경우
주요 토의내용	□ **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**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0년 12월 11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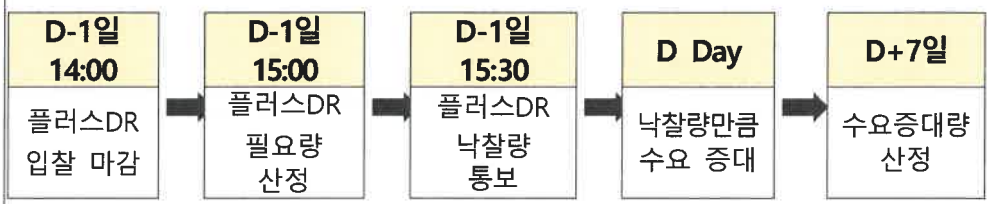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 (직인)

한송희/202012151628 39

12792005041608017326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플러스DR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6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0-6-8호
개최일시	2020년 12월 11일 14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**참여방법** ○ 수요관리사업자는 별도의 플러스DR 자원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○ 신재생발전사업자는 발전소 단위로 참여신청서 제출 후 참여 가능 □ **운영기준** ○ 수요관리사업자가 수요증대량을 사전 입찰(D-1일 14:00)하고, 신재생 출력제어가 예상되어 플러스 DR 개설시 사업자별 낙찰량 통보(D-1일 15:30) 및 해당시간에 수요를 증대(D-DAY) ○ 제주 신재생예측시스템 예측결과 출력제어량이 시장개설기준 이상 예상될 경우 1시간 단위로 플러스DR 시장을 개설 ○ (시장개설기준) 제주 신재생예측시스템 예측정확도 및 출력제어 실적 등을 검토하여 거래소에서 산정하고, 산정결과를 DR운영시스템에 공표 □ **운영시간 및 절차** ○ (운영시간) 평일 09시~18시 (9시간) ○ (운영절차) 

한송희/20201215162839
1279200504160801732 6

<table>
<tr>
<td>제안내용</td>
<td>
☐ 등록요건
<table>
<tr><th>고객 구성</th><th>CBL*
산정방식</th><th>지속시간</th><th>최소등록용량</th></tr>
<tr><td>제주지역에 주소지를 둔
1개 이상의 고객으로 구성</td><td>MID(4/6)**</td><td>제한 없음</td><td>제한 없음</td></tr>
</table>
☐ 정산기준
ㅇ 수요증대량을 신재생발전사업자가 해당시간 제주 SMP로 구입
ㅇ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수요증대량만큼 발전량 증대
ㅇ 이행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하여 이행률 향상 유도
<table>
<tr><th>이행률</th><th>❶ 80% 이상</th><th>❷ 80% 미만</th></tr>
<tr><td>가중치</td><td>SMP×1.0</td><td>SMP×0.8</td></tr>
</table>
☐ 정산일정 : 현행DR과 동일 (2개월 후 정산금 청구 및 지급)
</td>
</tr>
<tr>
<td>주요
토의내용</td>
<td>
☐ 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
ㅇ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
☐ 기타 의견
ㅇ 농사용 전기사업자가 플러스 DR 자원으로 과다유입될 수 있어 한전과 협의하여 개선방안 마련 필요
</td>
</tr>
</table>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0년 12월 11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 (직인)

한송희/20201215162839

12792005041608017326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6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0-6-9호
개최일시	2020년 12월 11일 14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(낙찰제도) 현행 가격결정발전계획 폐지, 제약 반영한 **운영발전계획으로 다음날 전력거래량 낙찰** □ (계통한계가격결정) 운영발전계획으로 낙찰된 전력거래량 기반으로 계통한계가격 결정 □ (에너지정산체계) **계획발전전력량정산금, 제약발전정산금, 제약비발전정산금을 전력량정산금, 연료비보전정산금, 기대이익정산금** 체계로 개편 □ (주파수제어서비스정산) 예비력 공급용량 기준이 아닌 **EMS 예비력공급실적에 의거**한 주파수제어서비스 정산용량 산정 □ (예비력용량가치정산) 발전계획수립시 예비력 배분으로 인한 발전량 감발 반영으로 예비력으로 인한 제약비발전정산금이 사라지게 되므로 **예비력용량가치에 대한 정산금 신설** □ (시행일) 실계통 여건 반영을 위한 IT시스템 구축 및 운영절차를 보완하여 **규칙개정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**
주요 토의내용	□ **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**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 □ **기타 의견** ○ **시행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, 시장참여자들도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참여기회 필요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0년 12월 11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 (직인)

한송희/20201215162839
12792005041608017326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을 위한 규정개정(안)

제6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0-6-10호
개최일시	2020년 12월 11일 14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(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)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**가스터빈과 스팀터빈 발전기 운전대수에 따른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** □ (발전계획·시장가격 결정) 운전조합별 비용함수와 호기별 기동비용을 반영한 발전계획 수립, **개별 발전가격(IGP) 및 시장가격(SMP) 산정** □ (정산제도)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**GT·ST 호기별 운전조합의 연료비용과 기동비용을 반영하여 정산** o (전력량 정산금) 발전계획량(PSE)과 실제 발전량(MGO)의 출력 구간에 해당하는 조합별 비용함수를 적용하여 정산금(GSCON, SCON, COFF) 산정 o (기동비용·기동대기비용 정산) 개별 발전기 단위로 실제 기동대수·시간·횟수 등을 반영하여 기동비용 조정(SUAP)과 기동대기비용(SUSBC) 및 열간 기동대기(HSUSBC) 정산 o (열제약 정산기준) 열제약에 따른 제약발전정산금(GSCON)은 시장가격(MP)로 정산 o (기타변경) 운전조합별 비용함수를 고려하여 SMP 결정시 제외된 발전기에 대한 추가정산 및 대체연료 사용시 정산 o (계통제약 추가정산금 폐지) 실제 운전상태에 따라 정산하게 되어 실제 연료비가 회수되므로 AASCON은 폐지 o (가스터빈 부분재기동정산금 폐지) 개별기기의 실제 기동비용이 보상되므로 가스터빈 부분재기동정산금은 폐지 □ (경과규정) **공고 후 2년이내 시행, 시행전까지 종전 규정 적용**

한송희/20201215162839
12792005041608017326

주요 토의내용	□ 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 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 □ 기타 의견 ○ 시행 전 열병합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 필요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0년 12월 11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 (서명)

한송희/20201215162839

12792005041608017326

【붙임 2】

보고사항 결과

보 고 내 용	보 고 결 과
▪ (제1호) 전차(제20-5차) 규칙개정위원회 결과보고 ▪ (제2호) 전차(제20-7차) 규칙개정위원회 결과보고	○ 원안 접수

한송희/20201216111938
09148005041608085187